

의안번호	제 호	심의 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3. . . (제 회)	

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
제출 연월일	2013. 12 . 12 .

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

##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□ 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『보훈예우수당』을 지급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참전유공자	참전명예수당	참전명예수당
국가유공자 유족		보훈예우수당

※수당지급대상 : 현재 참전명예수당→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으로 확대함.

#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□ 관련근거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19조 (예우 및 지원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, 제3조(정부의 시책)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
##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9조의2(보훈예우수당)**①군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에 대하여 “법”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액·범위·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보훈예우수당 ) ①</u>군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에 대하여 “법”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②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액·범위·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담당	
연 락 처	(054) 950 - 6161